

## 1. 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법률 제20145호, 2024. 1. 26. 공포, 2024. 5. 27. 시행)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하에 우주항공청이 신설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목적(안 제1조)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소속으로 있는 우주항공청장을 지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나. 중요정책 사항 등의 승인과 보고(안 제2조)

청장은 국제협력에 관한 중요계획 수립, 국제기구 가입 등에 대해서는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며, 국무회의 상정 사항 및 중요 업무실적 등은 보고하도록 함.

### 다. 인사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승진임용, 전보 또는 징계한 경우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라. 예산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청장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예산요구서, 예비비사용요구서 등에 대하여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마. 법령 질의(안 제5조)

청장은 소관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질의하여 회신을 받았을 때는 지체없이 그 사본을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바. 승인 및 보고의 방법(안 제6조)

이 규칙에 따른 승인 및 보고는 보고서 등을 장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문서에 직접 결재 받는 방법으로 함.

사. 정책협의회(안 제7조)

장관은 중요정책에 대한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청장과 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소속으로 있는 우주항공청장을 지휘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① 우주항공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국제협력에 관한 중요 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에 관한 사항
2. 국제기구의 가입과 국제협정에 관한 사항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직제 개정
2.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안건
3. 장관이 참여하는 정부기관 또는 국가 간 회의·협의체와 그 하부 회의·협의체에 상정하는 안건
4. 청장의 국제회의 참석 및 국외출장

③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대통령, 국무총리 및 장관의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계획과 그 실적

2. 주요정책 및 계획의 추진 실적

3. 대통령, 국무총리 및 국회,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는 자료 중 중요한 사항

4.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및 처분 요구사항 중 중요 정책과 관련된 사항

5. 그 외 장관이 중요 정책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3조(인사에 관한 사항)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사 후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승진임용 및 전보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특별채용·특별승진

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전입·전출

4.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징계

제4조(예산에 관한 사항) 청장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예산 요구서(추가경정예산 요구서를 포함한다)

2. 예비비 사용 요구서

제5조(법령 질의) 청장은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질의하여 회신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승인 및 보고의 방법 등) ① 이 규칙에 따른 승인 및 보고는 승인

신청서 또는 보고서를 장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사안의 긴급성·복잡성이나 보안상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문서에 직접 결재를 받는 방법으로 한다.

② 이 규칙에 따른 승인 및 보고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융합연구정책관이 총괄한다.

제7조(정책협의회) 장관은 우주항공청 주요 업무의 추진 현황과 중요 정책사항에 대한 업무협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청장과 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